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9. 4.(수) 09:31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허 욱 상임위원 (1인)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1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4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42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및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9-43-254)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의결주문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그린나래에게 미디어랩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제한이유입니다. ‘MBN미디어랩사의 주식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그린나래에 대해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올해 2월 MBN미디어랩 자체조사 결과 (주)그린나래 소유제한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제출 시, (주)그린나래 소유제한 위반사실을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주)그린나래 위반사실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7월에는 미디어랩사 영업보고서 검증 시에도 동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주)그린나래에게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였고, 이견 없다는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랩사 소유제한 관련 법 규정입니다. 미디어랩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광고대행자는 미디어랩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랩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분을 소유한 자에게는 동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위반사항입니다. (주)그린나래가 MBN미디어랩 주주 참여 시 업종이 당시에는 ‘건강’, ‘무역’ 등으로 신고되어 문제가 없었으나, 작년 10월 26일에 ‘광고대행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랩법 제13조제4항제3호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방안입니다. MBN미디어랩사의 주주 (주)그린나래는 미디어랩법 제13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하였습니다. 피심인 의견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소유제한 위반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음”으로 제출하여 위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디어랩법 제13조 제6항에 의거하여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 처분이 적정 하겠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9월에 (주)그린나래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 하고, 6개월 후인 '20년 2월에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 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 사안은 MBN이 스스로 위반사실을 자체조사로 적발해서 우리에게 신고를 한 셈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올 3월에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제출 시에 관련 사항을 저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이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런데 왜 그린나래라고 하는 자본에 참여한 주주가 광고대행업자는 주식 소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모르고 물론 했겠지만, (주)그린나래 측 입장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들었으며, 동 사실에 대해서 “의견없음”으로 그리고 지난 2월에 MBN미디어랩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을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주)그린나래가 당초에 MBN이 처음 출발할 때 주주로 참여하면서 건강과 무역 업종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가 5년 뒤 작년에 광고대행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MBN미디어랩과 상의를 한 사실이 없나 보지요?

○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자체적으로 사업허가등록증을 통해 변경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MBN미디어랩 측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자기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업종을 바꾸겠다, 혹시 우리 자격에 문제가 생기느냐?' (주)그린나래가 MBN미디어랩에 의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MBN미디어랩이 고의로 숨기고 있는 부분은 없고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알려왔기 때문에 MBN미디어랩사의 고의성이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반사실을 다들 인정하고 있다니 우리는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만 내리면 되는 것이지요?

○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린나래는 MBN미디어랩 지분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MBN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때는 MBN미디어랩의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랩만?

○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MBN의 주주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단순히 지분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나라가 사업적으로나 인적으로 MBN 내지는 MBN미디어랩과 다른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법사항이 아니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궁금해서요.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위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소유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되어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도 적정한 것 같고, 저는 이 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과장님, 예전에 우리가 협찬 관련 사항을 처리할 때 시정명령과 함께 종편 미디어랩이 모기업인 신문사 광고국과 결합해서 통합 마케팅 하는 것들을 못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기업 신문사의 광고국 직원들이나, 특히 종편 미디어랩의 직원들이 종편 내부 편성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못 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 그 이후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됐습니까?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조사과에서 그 당시 MBN미디어랩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협찬에 관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협찬 관련해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시장조사과와 같이 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고, 또 우리 위원회가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뒤에 민원제기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미디어렐사 직원들이 종편의 경영전략회의에는 참석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방송의 제작과 편성에 관련된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만연했습니다만 신문과 종편이 공동 마케팅으로 광고영업을 하는 것들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됐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정책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방송시장조사과와 같이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지금 점검할 때가 됐습니다.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원안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미디어렐을 설치하지 않고 24시간 보도방송을 하면서 광고영업을 직접 하고 있는 2개 방송사업자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뉴스Y의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이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문제도 같이 충분히 검토해서 광고제도 개선을 하면서 전부 다 종합적으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이유입니다.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중 미디어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로 결합판매 최소 지원 규모 등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올해 3월 미디어렐 6개사가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5~7월까지 영업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확정된 2018년도 지상파 방송 광고매출에 따라 결합판매 지원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상파 미디어렐별 결합판매 평균 비율은 직전 회계연도 5년간(’14년~’18년) 미디어렐의 결합판매 총매출액을 동 미디어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였습니다. 산정 결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2.4141%, (주)에스비에스엠앤씨는 9.1233%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결합 판매사업자인 KOBACO와 (주)에스비에스엠앤씨가 결합판매해야 하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자별로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입니다. 산식은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지원대상인 지역·중소방송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동 미디어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산정결과는 아래 <표>를 보시면 부산MBC 등 38개 사업자의 산정결과는 <표>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9월에 행정예고를 하고, 사전 규제 심사를 거친 후에 10월에는 위원회의결 및 관보게재, 그리고 10월 말에 고시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것은 법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출해서 꼭 한 것이니까 다른 것은 이의가 없지만 하나 에스비에스엠앤씨가 대행하는 사업자 가운데 OBS가 있습니다. 다른 쪽은 전부 다 1.1%, 0.89%, 0.74% 이런 데 비해 OBS는 3.489%로 굉장히 높은데, 이것이 당초 신생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해 준 것은 이해하는데 그에 따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특별히 이 사업자만 이렇게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현재 미디어렐법상으로는 직전 회계연도 5개년을 평균 광고매출액을 근거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당초 ’12년도에 OBS 결합판매 비율을 최초로 산정할 때 당시 상황과 위원회 당시 보고안건에 따르면 OBS뿐만 아니라 다른 YTN라디오 등 4개사 합해서 5개사 정도는 직전 회계연도 5개년이 나오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17.3% 정도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5개사에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1년 광고매출액 대비 17.3%를 가중해서 최초 결합판매액을 산정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5개년씩 직전 회계연도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최초 미디어렐법에 따라 결합판매 시행 이전에 이미 기존에도 다 하고 있던 부분이고 기존의 광고판매액이 OBS의 경우 타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디어렐법이 제정되고 또

결합판매를 적용하면서 그대로 적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OBS의 경우 전파료가 없고 다른 지역민방과 달리 경기지역에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초창기 신생사업자로서 배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데 신생사업자일 때는 그렇지만 이미 출범한지가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신생사업자 5개사에 대해 특별한 율을 적용해 줬던 사업자 가운데 YTN라디오의 경우에는 0.169%, 그리고 영어방송 쪽은 0.05%, 0.006%, 0.01% 이런 식인데 OBS만 계속해서 이렇게 이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앞으로도 계속 적용될 것 아닙니까?

○ 김재철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

-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가중했다는 것은 최초 처음에 할 때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5개년치의 실적을 봐야 하는데 이 사업자들은 신생사업자라서 5개년 실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할 때만 17% 정도를 가중해서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한 번만 가중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OBS가 다른 데보다 수치가 높지 않으나 하는 것인데 OBS가 매출액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 매출액이 다른 데보다 많기 때문에 매출액을 나눠 가지는 총액 중 OBS가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이 높게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수치는 매년 유사하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은 기계적으로 산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결합판매제도에 대해서는 모두가 불만이지 않습니까? 중앙의 Key사인 K·M·S도 불만이고, 또 지역MBC, 지역민방들은 그들대로 불만이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방송 등 특수방송들도 불만이고, 김재철 과장님 잘 아시지요?

○ 김재철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역사가 있습니다만 과거 광고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대로 서로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지내왔는데 지금은 폭발 직전인 것 같습니다. 지상파방송사만 보더라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금년 상반기에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아마 한 5년 평균 놓고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줄어든 만큼 앞으로 사업자들끼리 결합판매를 놓고 서로 상당히 이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결합판매로 인해 광고단가가 많게는 30% 가까이 종편사들에 비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광고하기를 꺼린다는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광고 결합판매 제도를 비롯해서 미디어렐 제도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했다면 앞으로 2년 정도 후, 제5기 방통위 중간 정도 가면 아마 광고시장이 또 급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은 급변해 있고, 아마 이 구조를 사업자들이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 정책과제, 그리고 제5기 정책과제는 지상파방송사들의 광고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분명한 것은 지금 이대로는 운영하지 못합니다. 결합판매 제도, 또 근본적으로 미디어렐 제도, 특히 MBC의 경우 KOBACO 시스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출 것도 아니고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였으면 벌써 답이 나왔겠지요. 그렇더라도 내년도 정책과제, 제5기 정책과제로 본다면 아마 이 문제는 제5기 임기 중반 정도에는 현안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대안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철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합판매 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다들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고, 그리고 소속된 중소방송사들 모두가 다 불만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SBS웹사에 OBS가 함께 있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방송권역이 겹치는 데다가 또 같은 민방이고, 그런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어떻게 보면 경쟁자 체제인데, 그리고 결합판매가 함께 묶여 있는 구성원들이 OBS와 같이 전부 지역민방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민방들은 SBS와 네트워크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분배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지만 경쟁사인 OBS에 결합판매로 엮어서 배분해 준다는 자체가 서로 간 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고, 특히 OBS는 전파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아주 독립적인 민방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성과 지역 시청권 확보를 위해 그런 특수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삼석 위원님 말씀처럼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제4기가 아니라 제5기 때에는 방송광고시장에 엄청난 변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 제도로는 갈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인 검토를 시작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지상파방송이 작년 1조 3,000억원에서 상반기만 해도 1,300억원, 1,100억원 쪽쪽 빠지는 굉장히 감소하는 위기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또 지금 크로스미디어렐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결합판매를 이대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재철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

- 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OBS를 SBS에 같이 판매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 종교방송들을 쪼개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방송을 SBS M&C로 묶을 것인지, 아니면 KOBACO 쪽으로 묶을 것인지 이에 따라 종교방송들이 서로 분열되기를 원치 않아서 그것을 다 놓다 보니까 결국은 OBS가 SBS 쪽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고,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지금 대통령께서 장관 후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위원회를 합의제 정신에 따라 정말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위원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역점으로 추진해 오셨던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일원화가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물러나시게 되어서 그 점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그 문제의 뜻을 이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이 그 사이 지켜 주셨던 방송언론학자로서의 원칙과 소신에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오늘이 이효성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는 마지막 위원회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마음이 많이 먹먹해집니다. 아시다시피 방송통신 위원장과 방통위원은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다 주지하는 바대로 방송의 독립과 또 정치적 중립, 공정성,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소신껏 직무에 임하라고 임기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중도에 2년 지나서 물러나시게 된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지난 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원장의 교체를 둘러싸고 그 배경에 관한 많은 논란들이 오고 갔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명제 안에서 서로 간에 충돌과 갈등이 있었지 않으나, 이런 야당의원들의 질의까지 나오는 형국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 스스로도 다짐 해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장님께서 스스로 물러나시기로 사의를 표명하셨고, 그에 따라 후임이 다음 주에 부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효성 위원장님께서 그야말로 방통위원회를 균형감 있게, 또 합리적으로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묵살하지 않고 충분히 반영해서 합의제 정신에 따라 운영해 오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쌓아 오신 여러 가지 족적들이 우리 방송통신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고, 또 방통위원회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고, 물러나시면 좋은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그렇게 덕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좋은 평가를 받으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건강 하십시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와 위원장님과 연이 특별한데 오늘 위원장님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2년 동안 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시고, 또 어려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발휘해 주셔서 원만하게 방송통신 분야를 끌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위원장님은 1996년에 처음 뵈었습니다. 그때는 시민단체에 정책을 자문해 주시는 전문가로서 뵈고, 2003년 참여 정부 때는 제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을 때 이효성 위원장님께서 舊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수고해 주셨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년 동안 위원장님과 같이 근무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난 세월 위원장님께서 언론학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기동과 같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셨고, 동시에 언론의 공적 책무를 강조하시면서 균형감 있게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생각해 보면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위원장님의 약속이자 제4기 방통위의 약속이 바로 언론자유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난 2년 동안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괄되게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행정구현을 비전으로 방송통신 정책의 패러다임을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는데 대단히 큰 기여를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 약자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만연되었던 방송통신 업계의 갑을관계 청산, 그리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큰 성과가 있었고, 또 아직 다 못 이룬 정책들, 추진하지 못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제4기 방통위원님들, 다른 분들을 제가 잘 모시고 애초에 생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 지금까지도 큰 역할을 해 주셨지만 방통위원회를 떠나시더라도 방송계, 언론계의 큰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위원장님께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건강하시고 또 앞길에 큰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박수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 이효성 위원장

- 고맙습니다. 과분한 평가를 해 주셔서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중간에 사퇴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임기를 다 마쳤으면 이런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왔습니다만 오늘이 제가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같이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회 안건을 거의 다 합의로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안건을 준비해 주신 우리 직원들의 수고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어느 한 분도 회의를 거부하거나 퇴장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일 없이 합리적이고 차분한 의견 개진과 토론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합의를 이끌도록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물론 제가 삭발을 매일 하고 나타나서 선제적으로 기선을 제압한 탓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위원회 회의를 물리적으로, 또는 폭력으로, 폭언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시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해서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주재하는 거의 모든 회의에서 한 번도 큰 설전이나 심지어 불쾌한 논란조차 없이 합리적인 토론으로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저로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미진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새로 오시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남은 임기 중에 잘 처리해서 제4기 위원회가 그야말로 많은 성과와 새로운 전례를 세우는 위원회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도움 감사드리고 뒤에 출입기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그러면,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0분 폐회 】